

김해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제 306 호 2014. 7. 4. (금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- 제2014-128호 김해(장유)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협의(인가) 고시 14961
- 제2014-130호 김해 도시관리계획(시설 : 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14963
- 제2014-133호 김해도시관리계획(제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4964

공 고

- 제2014-149호 국가기초구역 변경(안) 공고 14965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김해시고시 제2014 - 128호

김해(장유)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협의(인가) 고시

1. 김해(장유)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법 제88조,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협의(인가) 사항을 같은법 제91조,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허가민원과(☎330-3705)에 비치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

2014. 07. 04.

김 해 시 장

가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김해(장유)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
- 명 칭 : 태경폴드프라자 주차빌딩 건립공사

나. 위 치 : 김해시 율하동 1333-4번지

다. 사업 시행면적 또는 규모

- 사업시행면적 : 1,230.1㎡
- 사업시행규모(건축연면적 : 2,762.06㎡, 1동/지상4층)
 - 주차장 : 1,941.73㎡(70.3%), 제1종근린생활시설 : 820.33㎡(29.7%)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(주)태경글로벌
- 주 소 : 김해시 율하3로 56, 108호(율하동 태경프라자)

마. 사업시행기간

- 사업의 착수 : 건축허가일로 부터
- 준공예정일 : 2014. 12. 30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

일련 번호	소재지	지번	지 목	지적 (㎡)	편입 면적 (㎡)	소유자		소유권이외의 권리		
						성 명	주소	성 명	주소	권리 내용
1	김해시 올하동	1333-4	차	1,230.1	1,230.1	(주)태경 글로벌	김해시 올하로56, 108호 (올하동 태경프라자)	-	-	-
					이	하	여	백		
소 계				1,230.1	1,230.1					

사. 실시계획인가 신청사유

- 태경폴드프라자 주차빌딩건립

아. 관계도면 : 실음생략 【허가민원과(☎330-3705)에 비치】

김해 도시관리계획(시설 : 주차장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김해 도시관리계획(시설:주차장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,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(☎330-3594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4. 07. 04.

김 해 시 장

가.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 정 일	비 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48	주차장	대동면 월촌리 637-3번지	650	-	650	2004. 7. 21	

나. 주차장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결정(변경)내용	변 경 사 유
48	주차장	○ 주차장 구역 변경	○ 기 결정된 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지형현황 및 지적경계를 고려한 구역 변경

다. 관계도면 : 실음생략

김해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

1. 김해시 고시 제2014-123호(2014. 6. 13)로 김해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2. 관계 도서 [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ltm.go.kr>)에서 열람가능] 는 김해시청 도시계획과(☎330-359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4. 07. 04.

김 해 시 장

1. 김해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조서

-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정정조서
- 정정사유 : 기정 면적 적용 착오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m ²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당초	5-1	여래 공원	근린 공원	진영읍 여래리,본산리, 신용리 일원	458,000	-	458,000	1977.08.29	
변경 (정정)	5-1	여래 공원	근린 공원	진영읍 여래리,본산리, 신용리 일원	552,508	-	552,508	1977.08.29	

- 기타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내용 : 변경 없음

2. 김해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도면 : 게재 생략

3. 김해도시관리계획(재정비) 결정(변경) 지형도면 : 게재 생략

국가기초구역 변경(안) 공고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2014. 7. 18. 까지 김해시(토지정보과)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7월 4일

김해시장

1. 국가기초구역 개요

- 기초구역 도입배경
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
- 기초구역 정의
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
- 기초구역 활용범위
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,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

2. 국가기초구역 변경(안) 현황

시군구명	설정 등 현황			예비구역번호 수
	설정	변경	폐지	
김해시	0	7	0	78

※ 국가기초구역 변경 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이를 시군구 홈페이지에 파일 게시하며 이를 김해시 토지정보과(☎055-330-248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다만 자료량이 많아 파일 게시가 곤란할 경우 이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3.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일 : 2014. 9. 26.

4. 문의

김해시 토지정보과 (☎055-330-2483)

1. 국가기초구역 변경(안) 현황

※ 도면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(KAIS)이나 김해시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따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구역번호	50939, 50964, 50965, 50941 김해시 흥동 180-1 일원
국가기초구역 설정기준	남해고속도로
국가기초구역 변경 사유	일부 건물과 화훼용 하우스 등이 기초구역선에 저촉되어 남해고속도로 중앙선으로 변경하여 인접 기초구역선과 일치시키고자 함



1. 국가기초구역 변경(안) 현황

※ 도면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(KAIS)이나 김해시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따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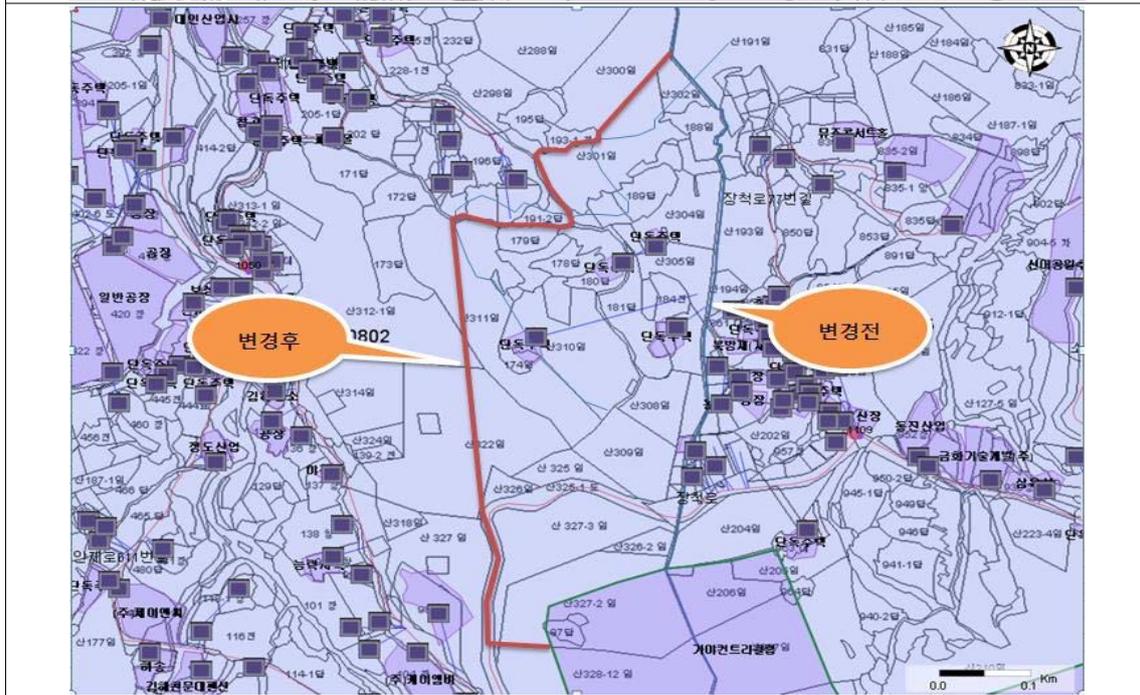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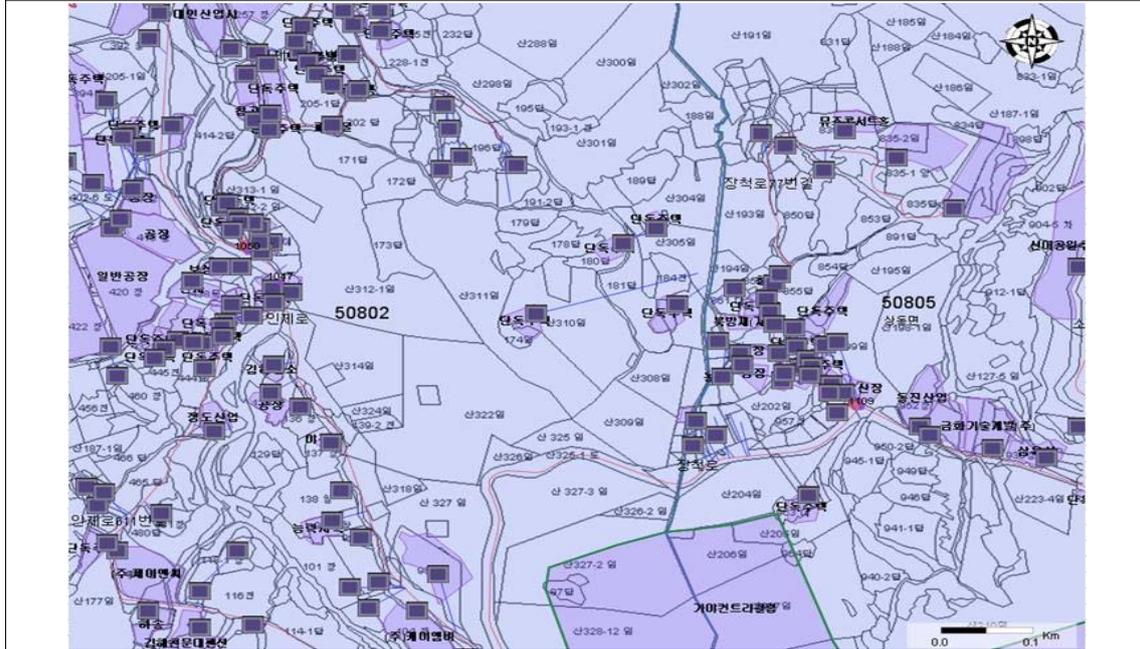
구역번호	50802, 50805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산277-5 일원
국가기초구역 설정기준	행정구역선
국가기초구역 변경 사유	나전일반산업단지지구로 일부 건물이 기초구역선에 저촉되어 행정구역 경계선으로 변경하고자 함



1. 국가기초구역 변경(안) 현황

※ 도면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(KAIS)이나 김해시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따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구역번호	50802, 50805,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96-2 일원
국가기초구역 설정기준	능선, 구거, 도로 경계
국가기초구역 설정·변경 및 폐지 사유	새로 주택지가 형성되면서 일부 건물이 저촉되어 능선과 구거, 도로 경계로 설정 변경



1. 국가기초구역 변경(안) 현황

※ 도면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(KAIS)이나 김해시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따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구역번호	50804, 50805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726-1 일원
국가기초구역 설정기준	능선, 고속도로, 도로 경계
국가기초구역 변경 사유	일부 건물이 저축되어 능선과 고속도로, 도로 경계로 설정 변경

